

[토론회]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 산업재해 예방제도 대책과 투쟁 과제

■ 일시 : 2020년 5월 27일 14시

■ 장소 : 공무원노조 회의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혁 박살! 대책위원회

- 토론회 순서 -

■ 사회 : 백종성 / 사회변혁노동자당 조직위원장

[1부] 산업재해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전지인 / 건강한 노동세상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투쟁 : 박준선 / 공공운
수노조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 : 이정호 / 민주
노총 세종충남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손익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 모임

[2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금속노조 :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현미향 사무국장

-민주노총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자료집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토론문 : 전지인 / 건강한 노동세상	-----	3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투쟁 : 박준선 / 공공우수노조	-----	9
사업장 지도감독의 강화와 노동자 참여보장 필요성 : 이정호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손익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7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금속노조 : 박세민 / 금속노조	-----	21
산재예방제도,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현미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55
노동안전보건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최명선 / 민주노총	-----	6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토론문

건강한노동세상

2018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의 산업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지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람중심”에서 하청, 비정규, 특고 노동자가 여전히 배제한 상태로 입법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던 김용균마저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청 책임 강화라는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원청의 책임 강화는 기존의 내용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한계만 더 명확해졌을 뿐이다. 2019년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55명에 달하고, 이는 하루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는 사람이 2.85명에 이른다는 말이다. 지난 2월 산재 사고로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제조 대기업 11곳의 명단이 공개됐고, 이중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등 10개 제조 사업장에서는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로 15명의 노동자가 죽었지만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조)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사업주의 이익이나 물적 재산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다. 과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하 개정 산안법)을 공포하면서 자랑스럽게 광고했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그 유의미성에 대해 짚어보며 추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개정 산안법에서는 1조 목적에 기존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으며, 입법예고에서는 호기롭게도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것은 개정 산안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를 모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개념은 그대로 두고 법의 목적(법 1조), 산업재해의 정의(법 2조), 정부의 책무(법 4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법 11조) 총칙의 단 4곳에서만 사용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서비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보호대상은 대략 50개 직종의 25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쿡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카드모집인, 대출 모집인)으로 제한되었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그마저도 4개 직종(건설기계, 골프장 캐디, 집화 또는 배송 업무, 대리운전)으로 한정했다.

배달대행 앱을 사용하여 오토바이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배달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고다발로 인해 배달대행 앱의 중개자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승차용 안전모 지급,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제한 금지의무만 이에 해당한다.(안전보건규칙 673조)

결국 개정 산안법에서 말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만 포함된 것이다. 이는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현실을 수습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입법방식의 한계만을 드러냈다.

2.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일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취급작업, 허가대상물질 사용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 설비 작업(설비 내부 작업이나 설비를 개조·분해·철거·해체하는 작업)은 원청이 사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도급 줄 수 있도록 추가했다.

위험에 특히 더 취약한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급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내도급만이 금지·승인 대상으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이 사외 영세사업장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위험의 외주화의 또 다른 대상이 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는 어떤 산업의 위험, 어떤 장소의 위험, 어떤 설비의 위험, 어떤 물질의 위험 때문에 발생하기보다 외주화 자체가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핵심 변수이다.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산업재해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이유는, 위험 업무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외주화로 인한 원·하청 체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해 위험이 방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3.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정부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기존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원청 사업장 전체

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21개 유형의 유해위험장소(산안법 시행령 11조, 산안법 시행규칙 6조)를 말한다. 즉 원청의 책임범위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 도급인의 사업장 +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and 원청의 지배·관리 장소 and 21종 유해위험 장소)’로 바뀐 것이다.

도급인의 사업장의 범위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로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노동자의 사고 장소가 기존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가 결국 21개의 유해위험장소로 한정된 것은 아쉽지만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확대된 것은 유의미하다.

원청의 처벌수준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이 받는 처벌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5년(2013~2017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10명 중 9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90.7%가 집행유예(33.46%)와 벌금형(57.26%)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2.9%에 불과했다.

4.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발주자의 의무 신설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주자의 개념을 정하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각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만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의 적극적

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두어 안전보건대장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항발기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하였다.

건설기계는 도급과 다르게 임대형식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므로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 때문에 개정 산안법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 도급인의 의무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27개의 건설기계 중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등 4가지로 제한하여 이번 개정 산안법이 28년만의 전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기준이나 형평성의 고려 없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하다 것이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남발되던 영업비밀에 의한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엄격한 요건을 정해 예외적으로 비공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제공 요청자가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노동자대표, 역학조사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한정되어 정작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재해자 본인 또는 유족, 법률대

리인 등의 당사자는 영업비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마무리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개정운동의 필요성

개정 산안법은 주요하게 3가지 의제를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둘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셋째, 원청 책임 강화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의제는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터에 내몰린 하청, 비정규직, 특고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주제를 관통한다.

하청, 비정규직, 특고노동자들의 위험은 외주화라는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 하청, 비정규직, 특고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산안법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보건시스템에 참여할 권리,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에게는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개정 산안법의 실효성을 위해 사업주와 원청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개정 산안법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나? 의미있는 개정 취지에도 개정 산안법은 그 한계만이 더욱 명확하다. 노동자는 비단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투쟁

박준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긴 구의역 김군이 목숨을 잃은 지 4년이 흘렀다. 더 이상 같은 죽음을 반복하지 말자는 추모와 분노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가득 메웠던 그 날도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발전소 현장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넘쳐난다.

1. 위험의 외주화 현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86.5%다. 자본가들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으로 내몰고 자신들은 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하청노동자들은 무권리의 상태에 놓이고 원청은 자신들은 고용하지 않아서, 하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놓이게 된다. 아래표를 보더라도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망노동자 원하청 비율>

연도	원청	하청	하청비율
2011	6	46	88.4
2012	14	39	73.5
2013	7	50	87.7
2014	4	41	91
2015	2	36	95
계	33	212	86.5

이런 현실은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구의역 김군이나 태안화력의 김용균 역시 하청노동자였다. 구의역 김군은 열차 운행 중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했고 태안화력 김용균은 컨베이어가 가동 중에 점검업무를 홀로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발전소의 산재 통계를 보더

라도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발전5개사 산재사망노동자 현황>

사업장	사망노동자 (원청)	사망노동자 (하청)
서부발전	1명	52명
중부발전	2명	49명
동서발전	1명	47명
남동발전	6명	45명
남부발전	1명	144명
합계	9명	337명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줄여나감으로서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여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이루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용역에서 자회사로 간접고용 이름 바꾸기 정책으로 전락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간접고용인 자회사로 전환을 추진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발전사와는 다른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입장만 발표했고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3. 주요 산재사고 조사위원회 -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거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 조선산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조선산업에서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는 연료환경설비안전과 경상정비의 직접고용과 재공영화를 권고했으나 정부

는 이를 거부했다. 이번에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에서도 건설 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사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가 이미 거대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기존의 정규직의 반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를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 역시 거부하거나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 승인 협소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대상을 위험물질 취급으로 한정하여 위험의 외주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지목된 조선소, 제철소, 발전소, 구의역 김군 업무 등은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정에서 외주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화해도 안전하게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김용균 사고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는 “위험은 외주화되었고 외주화는 위험을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5. 위험의 외주화 금지-투쟁할 수 있는 기본대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산재사망사고의 상당수는 하청노동자들에게서 벌어진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도 투쟁을 조직하기 매우 어렵다.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투쟁에 나선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구의역과 태안화력의 투쟁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점, 다행히 노동조

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을 위한 기본 대응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 삼고 투쟁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조합 내부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기본적인인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대응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6.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 사업에 노동자 건강권 쟁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올해 금속, 공공, 민주일반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조정신청을 진행한 단위들이 있다. 원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는 2개 사업장(지역난방안전지부, 마사회지부)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더욱 확대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임금교섭만이 아니라 노동안전보건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하는 힘있는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사업장 지도감독의 강화와 노동자 참여보장의 필요성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1.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의 현실

1)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과 사법처리 자체가 이례적임.

- 2018년 기준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비율은 매년 90%를 상회함.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의 정기 감독 사업장은 1%에 불과함.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8개월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유해위험 상황신고는 5,188건 중 시정조치가 4,965건이며, 사법조치는 157건에 불과함. 유해위험 상황신고 건수의 3%만이 사법조치 되고, 96%는 시정조치로 처분된 것이며 사업장당 과태료는 14만원에 불과함.

-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 사측은 위법상황을 개선하는 것보다 정기 감독을 회피하는 것에 골몰하는 것이 일반적. 이는 사측이 정기감독 대상이 되기 않기 위해 산재 은폐 시도로 이어짐.

- 감독관이 위법상황을 인지해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음.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문서상으로 확인할 뿐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자신은 법에 적시 되어 있는 내용만 가능하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대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은 0.25%에 불과함. 이는 설치 대상이 업종과 규모별로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임. 산보위 법정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설치 사업장은 약 1,400개 사업장(약 18.2%). 하지만 노동부는 매년 평균 290개 사업장을 적발해서, 사업장당 평균 2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임. 산보위 심의 의결사항 미이행의 경우는 매년 38건 적발에 그치고, 사업장당 평균 벌금은 115만원에 불과.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위법상황 인지 시 감독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이는 실시되지 않음.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임. 2018년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명 담당 사업장이 4,513개인 현실이 고용노동부의 변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임.

2)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진행되어도 항상 부실한 지도감독이 반복됨.

- 안전난간 미설치 등 고용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사법처리 하는 내용은 형식적임. 특히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부분은 서류상으로 검토됨. 불시감독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무용지물. 또한 파급효과가 큰 설비, 인원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처리함.
- 현장 노동자의 증언을 매우 제한적으로 청취. 특별안전교육,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보위 등 서류가 거짓으로 준비되어 있음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함. 결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에 대해 대응하면 표피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현실임.
- 고용노동부는 수사사실 공표를 명분 삼아 지도감독의 내실화를 하지 않음. 문제제기하면 일정 부분 개선이 되지만 이는 한계가 큼. 민주노총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실행행사가 없으면 흥정하듯이 진행됨

3) 현장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지도감독

- 권고는 현실에서 전혀 의미가 없음. 시정명령이 내려져야 문서보고를 하는 수준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사측을 강제하려는 의지가 없음.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위법사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사측은 지도감독이 끝나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 반복됨.
- 결국 지도감독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처벌에서는 현장개선이 중요하다는 변명을 하지만 역으로 가장 의지가 없는 부분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측에게 막히기 전에 고용노동부에게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임.

2. 노동자 참여보장의 현실

1)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 참여도 보장되지 않음.

- 산보위를 비롯해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근로자 대표 확인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시 근로자 대표 동의권 / 원하청합동안전점검 원하청 노동자 참여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대표 참여 / 건강진단시 노동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요구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노동조합 및 노동자 참여 /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명시 / 감독, 점검, 조사 등에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등
-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 참여도 제대로 보장되는 사업장이 거의 없음. 법적 기준

은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에서 진일보한 노동자 참여 보장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의 부실과 크게 맞물려 있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 제도는 유명무실

- 2018년 기준으로 명산감 위축은 더욱 감소하고 있음. 사내명산감 2,879명, 사외명산감 237명으로 전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3,116명에 불과함. 명산감은 연임이 가능함에도 3년 사이 8% 가까이 감소한 것임.
- 민주노총이 있을 경우 사내명산감이라도, 이는 민주노총 내를 보더라도 편차가 극심함. 사외명산감의 경우 사업장 출입 불가하며,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사외명산감은 고려대상이 아닌 현실에서 의미가 없는 상황임. 명산감 협의회는 기본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업종별 협의회 등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함.
- 명산감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조차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에서는 여실히 드러남.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취지에서 탈각하여 명산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것을 스스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산감을 통한 활동시간 확보 등은 역량이 있는 사업장 극히 일부만 가능한 것이 되고 있음.

3. 결국 투쟁을 통해 하나하나 쟁취해야 하지만 반복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의 강화는 법적으로 처벌과 개선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요한 기제가 됨. 이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권리에 사각지대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함.
-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지도감독의 현실에서 이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투쟁을 통해 고용노동부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항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현실임.
- 노동자 참여의 부분도 현장활동 강화, 명산감 협의회 등 작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도해보고 있으나, 역량의 한계와 각개약진의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 투쟁의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측면과 더불어 진일보가 아니라 현실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심지어 민주노총 스스로의 공동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물론 사업장의 현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최소한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 고용노동부가 이를 이용하며 하향평준화를 하는 것에 분노와 무력감이 커지는 현실임. 그럼

에도 결국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투쟁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의 내용을 강제하고, 노동자 참여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기본일 것이라 판단함. 하지만 전체 차원에서 능동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손익찬 변호사 /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1. 현황

1.1.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체계적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기업살인법’이었고, 이후에는 순화된 표현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으로 바뀌 불렸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입법 발의가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노동계와 세월호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의 뜻을 담고 노회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2006761)>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곧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1.2.

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피해자 단체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몇 가지만 추려본다. 먼저, 정부당국의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물증확보에 실패하고, 관련자들도 미리 입을 맞춰놓고 시작하여 제대로된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현행법 체계상 정말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법망을 피해가고, 중간관리자나 억울한 실무자, 혹은 동료 노동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울러, 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양형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1.3.

법률의 언어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을 정리해보자. 현행법은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가므로 ‘응보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형량이 낮으므로 다른 기업들도 법준수를 우습게 알게 되는데, 즉 형벌의 범죄억지력(위하력)이 떨어져서 ‘일반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같은 기업이 여러차례 선정되는 것을 보면,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예방적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자의 사망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산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관련 조문을 보자. 먼저, 산안법상 처벌규정인 제167조 제1항은 산안법상 안전

조치, 보건조치 의무,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두 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91도2642 판결).

2. 현행법상의 쟁점 (8가지)

2.1.

현행법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안법 위반죄는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라는 고의의 기본범죄와 그로 인한 과실의 중한 결과(사망)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고의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욕을 요건으로 하므로, ‘누구’를 산안법 위반의 피의자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산안법은 의무주체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이사나 관리자를 처벌할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산안법 제173조 양벌규정의 해석에 따라 행위자가 처벌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도7834호 판결). 그러면 법인인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에 관한 행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있어서, 실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대개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가 선임되어 있으면 그를 피의자로 보아 입건하고 처벌한다. 달리말하면 이 경우 대표이사가 처벌될 일은 없다. 참고로 개인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이 피의자가 된다.

2.2.

둘째로 ‘근로자’인지가 문제된다. 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면 설령 산안법 위반이 있다고 한들 사업주-근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대법원 2005도3700 판결).

2.3.

셋째로 ‘산안법 위반’의 입증 문제이다. 산안법 위반죄는 고의의 기본범죄가 전제되므로 과연 그 기본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산안법은 구체적인 구성요건 표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하게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잘못도 발견되고 노동자가 사망했어도 산안법 위반이 없다면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2.4.

넷째로 산안법 위반의 ‘고의’ 입증의 문제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산안법상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가 위반된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실제로 의무위반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사망하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도11906 판결).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자신이 작업지시를 똑바로 하고 교육도 했음에도 노동자가 지시를 위반했다거나, 자신의 산안법상 의무위반보다도 노동자의 과실이 크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작업을 아무런 지시도 없었는데 노동자가 우발적으로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2.5.

다섯째로 산안법 위반과 사망의 결과의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다.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위반과 무관하다는 부인을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된다.

2.6.

여섯째로 양형의 문제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판결들을 접어두더라도, 고용노동부 의뢰로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책임연구원 경북대 법전원 김성룡 교수)가 수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2018. 12.)에 따르면, 법원은 압도적 다수의 사건에서 노동자가 1명이 죽든 10명이 죽든지와 무관하게, 비교적 단기의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나열한 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업주에게도 500~1,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통계상 확인된다고 한다(216면).

2.7.

일곱 번째로 도급사업주 처벌의 문제다. 구법과 달리 현행법은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건도 사업주의 위반과 동일한 조문에서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도급사업주 측임에도 그에 맞는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다.

3.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내용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발의된 노회찬 의원안의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3.1.

앞서 살펴본 현행법의 한계와 비교해보면 다음의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경영책임자 등(대표이사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을 피의자로 보는 것부터가 다르다. 이 법안에서는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유사하게 포괄적으로 구성요건을 정한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정하여 근로자성을 다투는것도 무의미해진다. 또 산안법 위반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도 고의와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함은 남는다. 양형에 있어서는 법정형을 대폭 상향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임대, 도급, 용역을 주더라도 위 조치의무를 동일하게 진다고 정하지만 과연 그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여전히 규명의 대상이다.

3.2.

현행법과의 비교 외에도, 이 법률안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대상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영업정지나 경영감시, 공계약 배제, 자금공모 금지) 등도 정하고 있고, 다만 보안처분을 어떻게 더 자세히 규정할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3.3.

참고로, 이 법은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단 하나의 행위에 원인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복합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발생한다.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업에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우려면 그 처벌이 정당화되는 포괄적이어면서도 정교한 구성요건 요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3.4.

해당 법안은 법리적으로 여러 논점을 담고 있으나, 현행법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 관한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되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관한 논의는 법안의 발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7명 1년 2,400명 이상 사망의 공범? 민주노총은 반역에 제대로 저항치 않는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박세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1. 변함없는 실태

- 하루에 7명이 죽고 한해 2,400명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 한해 2,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이 30년 이상 한치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권도 OECD 최고의 중대재해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제도 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 정권은 없었다.
-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 후보시절 안전서약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당선 이 후 ‘중대재해 대응 원칙’과 (전면 작업중지, 노동자 의견 청취 후 작업중지 해제 등) ‘산 재사망 절반감소’를 핵심 과제로 발표하는 등 의지를 발동하는 듯했지만, 집권 초기 반짝 했던 약속은 사라져 버렸고 기업 편들기와 안전보건 규제완화로 생명안전제도와 정책은 후퇴되고 개악되고 있다.

2. 참혹한 노동재해 현실이 지속되는 원인

- 원인은 자본의 탐욕과 생명 안전의 경시에 있다. 자본의 이윤본질과 생명경시는 비정규직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로 나타났다.
- 원인은 노동자 생명안전보호 의무를 방기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 노동재해와 중대재 해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고 생명안전 정책과 제도개악을 자행하고, 규제완화와 재벌을 위시한 사용자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잘못된 국정기조와 정책 지도감독 방기에 있다.
- 참혹한 노동재해 다발 지속 이면에는 강령과 규약에 명시된 ‘산업재해 추방, 안전하고 쾌 적한 노동환경을 쟁취’의 목적과 사업을 방기한 민주노총이 있었다.

3. 노동재해 근절을 위해 동의 되는 실천과제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절차 개정
- 산재보험제도개혁

4. 민주노총은?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돌아켜보자.

1) 몰라서 못 하는가? 알고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 2008년 이천참사와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김용균의 죽음과 현대제철,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노동재해 다발 원인에 대해 모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용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안전에 신경 쓰게 될 것인지몰랐는가?
- 무엇을 과제로 삼아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인지? 민주노총도 노동시민사회단체도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청와대도 참모진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2017년 대선 공약인 ‘안전서약 10대 과제’는 나올 수 없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조직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노동 권력과 대한민국 권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할 생각도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주체들의 투쟁은 미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은 20년 집권을 꿈꾸며 달콤하다.

2) 주장이나 시늉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에는 ‘산업재해 추방,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쟁취’라는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들은 한결같이 얘기했다.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노동자, 시민이 함께 싸우는 길에 앞장서 나가겠노라고!
[첨부1. 2017년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 안전 대토론회 인사말]
[첨부2. 2017년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 안전 대토론회 토론문]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이 결정한 노동안전보건 사업과 투쟁에 대해 언제나 그 이상으로 응답하고 실천해왔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해 “생명안전 쟁취를 위해 지금 투쟁하자”고, “좀 더 투쟁하자”고, “더 강하게 투쟁하자”고 실천과 투쟁을 제안하고 논의하며 괴로워하고 투쟁하며 고통받아 왔다. 그 과정에서 당면하게 요구되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실천으로 받아 안지 못하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대책위’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첨부3.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실천제안]

[첨부4. 위험의 외주화금지대책위 참여 제안서]

[첨부5.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실천제안]

-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언제나 그것이 고민이었다.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충분했는가?

- 민주노총과 지도부가 노동재해,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거나 한건지? 해결 의지가 있거나 한건지?
-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민주노총의 정책과 이를 반영한 사업과 실천에서 확인될 수 있다.
- 대의원대회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었는가? 노동안전보건실 사업으로 배치되었는가? 매년 개최되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 사업에는 반영되었는가? 약속을 하면 실천이 배치되고 지켜지기는 하는 것인가?
- 매년 개최되고 결의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핵심적인 실천과제로 단 한번이라도 생명안전투쟁이 입안된 적이 있는가?
- 단 한 차례라도 산업재해 문제해결이나 노동자 산재 사망을 막자며 생명안전 과제를 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 전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설득하고 의지를 모아 나간 적이 있는가?
- 민주노총이 죽어가는 노동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힘들지만 제발 투쟁하자고! 이것 좀 해보자고! 앞장서서 제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고 산하조직과 가맹조직에 읍소하고 투쟁을 조직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 세월은 역대 정권이 노동자 죽음을 등한시했던 세월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 앞장서 생명안전쟁취 실천 투쟁을 선제적으로 계획하여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전개한 적은 없었다.
- 2020년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에는 이러저러한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 모든 과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으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이라도 우선 해결을 시도해보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년을 만들겠다”가 그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입법 청원 운동 이상으로 읽히지 않는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발생 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태일 2법 추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시켜 전태일 3법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전태일 3법 추진의 방법의 핵심은 국회 입법 청원이다.
- 국회 입법청원 같은 실천으로 민주노총의 숙원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권 앞에 참으로 부담 없고 제도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10만 청원이 성사되어도 그 자체로 법이 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그저 심사를 진행할 뿐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은 201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이후 그저 그렇게 8년이 흘러갔듯 한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될 수도 있다.

- 민주노총 전 조직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전 조직적 실천 노력이 없는, 대중투쟁의 힘으로 강제되지 못하는 실천방안은 공허와 실패를 부를 뿐이다.
- 2020년에는 입법 발의 운동 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 2021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년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자..... 그렇게 평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국회동의 입법청원 방식의 제한적인 제도 틀에 갇힌 실천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으로 그렇지 않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대중투쟁과 함께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 되지 않는다.
-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 속에서 현장과 지역에서 대책활동을 조직하고 투쟁으로 치열하게 맞서는 것과 연동되지 못하는 국회 동의 입법청원 발의자 운동은 공허하다. 성공할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반역의 역사를 목인할 것인가?

하루 7명 1년 2,400명 이상 산재 사망의 책임에서 민주노총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공범이 아닐까? 나는 스스로를 공범이라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반역의 역사 목인을 지속하고자 하는가?

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고 나서지 않는 것인지? 왜 문재인 만나고 정세균을 만나고 이재갑을 만나면서 먹살잡이라도 하지 않는 건지? 나는 이해 할 수 없다.

①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와 상층 간부들의 철저한 반성과 대 각성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민주노총 그리고 가맹조직 지도자들이 ‘노동의 과정에서 다치고 죽는 문제는 늘 있어 왔던 일이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조합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더 중요한 일들이 켜켜이 쌓여있다고 있다고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벌어 먹고 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인식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은 기초가 되는 것이고 생존권, 기본권에 해당한다.
- 민주노총은 생존권과 기본권 침해에 저항하고 총력을 다해 맞서야 했다. 전태일 2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주장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매년 8만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2,400명 노동자가 사망하고, 공상 등 산재은폐를 감안하면 비공식적으로 30

만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현실 속에서 원죄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침해에 저항해야 마땅했다.

- 왜? 산업재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기본권 침해에 목숨 걸고 조직의 총력을 다해 맞서지 않는 것인가? 생존권과 기본권이 짓밟히는 것을 등한시한 채 한발 더 나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 생각된다.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책무 방기에 단호한 저항과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어떻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 할 수 있는가?

② 민주노총에 대한 내부 투쟁이 필요하다.

-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투쟁이 필요하다.
- 적극적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지못해 등 떠밀려 투쟁을 배치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민주노총에 대한..... 투쟁은 뒷전이고 정부와의 대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민주노총 관료들에 대한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각종 회의와 의결구조 속에서 사업 배치와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비판과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③ 민주노총 전체 가맹 산하조직 간부들과 활동가들의 조직내 내부투쟁이 필요하다.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교수노조, 민주여성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전교조, 정보경제연맹
- 민주노총 전체 가맹조직 중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안전 확보를 조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전담활동가를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건설, 공공, 금속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 그러나 생명 안전과 관련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다. 가맹 조직들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안전 과제를 조직의 주요 과제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건강한 내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5)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나서자”

①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 가맹조직들이 산재 직업병 생명안전 의제를 자각하고 투쟁해 나가도록 교육하고 지도, 지원해야 하고 경험이 쌓인 연맹과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 가맹조직들의 공동 의제를 묶어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②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요구하고 지금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 전국적 총파업을 해결하겠다는 조직의 의지로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다치게 하지 말라고, 골병들게 하지 말라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노동자도 국민 취급을 해 달라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의 1/10만의 노력이라도 기울여 달라고!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③ 대중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 매일 같이 터져 나오는 중대재해 폭발사고 등 현안에 대해 산하조직(민주노총 지역본부)과 관련 가맹조직(산별연맹)이 노동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대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사업주의 기업 살인 행위를 드러내야 한다.
- 사고 수습 대책에 불과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졸속적 해제' 과정에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 지도감독 부실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의 공분을 조직해야 한다.
- 투쟁의 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제도 전면 개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생명안전 과제를 현장과 지역에 각인시키고 간부와 활동가들을 단련시켜 내야 한다.

④ 노동자 생명안전 쟁취 과제를 하나로 묶어내 투쟁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투쟁과 나머지 주요 실천과제들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 통일적 의제로 결합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⑤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의 현안 실천에 생명안전 쟁취 투쟁을 결합시켜 내야 한다.

- 차별철폐대행진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수는 있어야지! 재벌 공간 열어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 홍보와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하다가 죽고 다치지는 말아야지! 죽지는 말아야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는 요구가 왜 함께 제기되지 못하는 걸까? 납득 할 수 없다.
- 민주노총의 현안 실천에, 가맹조직의 현안 실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생명안전 쟁취 투쟁을 결합시켜 내야 한다.
- ⑥ 조직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조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지 않는 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목숨 걸고 투쟁에 나서면 안되는 걸까요? 민주노총이 진정성 있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전 조직적으로 맞서겠다는 지침이 있다면 기꺼이 복무할 조합원들과 폭탄이라도 지고 나설 활동가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다만 조직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첨부1. 2017년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 안전 대토론회 인사말]

인사글

민주노총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 나아갑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그러나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은 여전하고, 오늘도 7명의 노동자 가족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분노와 절망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차 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 가슴기 살균제 참사까지 계속된 시민재해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나라냐? 라는 깊은 절망과 더할 수 없는 분노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구의역 참사를 비롯 각종 참사 때 앞 다투어 찾아왔던 정치인, 중대 사고마다 머리를 조아린 대기업 총수, 정부 책임자들은 대 언론 퍼포먼스에만 골몰했을 뿐입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은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국정 농단의 공범인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평등한 일터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과 인력충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이 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규제완화를 철폐하고, 통제와 전시행정의 안전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안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 왔을 뿐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되고 박근혜 없는 봄을 맞이했지만, 1,700만 촛불 시민혁명으로 맞이한 20대 대선에서도 생명안전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안전한 사회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지만,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정책이 세워지고 주요 공약으로 배치되며, 이후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노동자, 시민이 함께 싸우는 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전국민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 2 영역별 안전과제_1

① [산업재해 안전]

죽고 다치고 골병드는 전쟁 같은 일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나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 박근혜가 퇴진하면 나의 삶은 나아질까요?

-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 연단에 24세 청년이 올라왔다. 청년은 전기공 노동자였다. 자신의 전공을 살리려고 월 120만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노동청, 노동위원회를 찾아갔지만 노동부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결국 해고를 당했다. 다른 직장을 구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 청년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물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이런 나의 삶이 나아질 기회가 올까요. 정말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다.
- 매년 2,400명이 죽고,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은 노동자만 9만 명이다. 수많은 산재는 은폐되어 통계조차 없다. 부천 현장에서 20대 청년노동자 6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과 뇌손상을 입고, 구의역 에서 19살 김 군이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 10 만 원짜리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빠져 죽는 사고가 3번 연거푸 일어나는 현장. 감정노동으로 자살하는 현장.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혈액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에 걸리는 현장. 이것이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2. 적폐중의 적폐. OECD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

- 1) 지난 15년간 산재사망 노동자는 3만5천 968명. 산재는 136만 3천 293명

- 해마다 2,4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지난 15년 동안 일터에서 죽음의 행진 지속
- 2015년 산재사망 2,066명. 정부 산재통계 9만 909명
-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실
- 산재은폐의 심각성으로 실질 산재는 정부 통계의 12배에서 30배에 달함

2) 지난 1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241조 1,239억

- 2017년 정부 총예산 400조의 60%가 산재로 손실
- 2,500만원 연봉 노동자 964만명 고용 가능 금액
- 매년 15조 7천 694억. 2015년에는 20조3천955억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억)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7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186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7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3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363,293	35,968	2,411,239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분류 없어 조정 못함	
평균	90,866	2,398	160,749		

-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3) 한국 산재사망의 특성

(1) 동일 유형,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 산재사망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수리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 : 2013년, 2015년, 2016년
- 안전펜스 없어 용광로 빠져 사망 : 2010년, 2012년, 2015년

- 현대중공업 매년 10명, 13명 산재사망 반복 : 현대건설, 대우건설, GS 건설

(2) 후진국 형 사망사고 반복

-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추락 사망

(3) 하청.파견,건설일용...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취약계층 산재사망 집중

- 건설노동자 매년 600여명 사망반복. 영국 건설업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 주요 대기업, 공공부문 산재사망 80%~100% 하청 비정규 노동자
-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3. 안전한 일터와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

1) 세부 과제

- 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상당부분이 시민안전 직결 사업장임. 이에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같이 과제로 제출하고 있음 .

<p>[안전한 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 확대 <p>[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생명안전 직결 업무 외주화 중단 및 인력 확충 ○ 공공안전 대책 수립 ○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2) 입법 정책대안

과제	입법, 정책 대안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	-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위험의 위주화 금지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 생명안전업무 도급, 재하도급 금지 - 생명안전 업무 기간제, 파견고용 금지 입법 -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 상시근로자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하청 노동자 참여 확보 - 원 하청 합산재해 도입 - 하도급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폐지 및 전면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감정노동 보호입법 - 산재은폐 근절, 병원 신고제도 도입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및 인정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해외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상 입증책임 전환 및 심사승인제도 개선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공공안전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 철도, 지하철 내구연한, 1인 승무제 폐지, 육상과적 화주 책임 도로법 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 폐쇄, 노후산단 전면 재보수 및 보수주기 도입. 산업단지 안전관리 법제화 -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 :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병원인력 확보 - 규제완화 철폐 및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폐기 - 공공안전에 노동자·시민 참여 구조 보장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관련 각종 전문가 선임 확대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공시 제도 도입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제

1)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 27만 3천 164명이 산재를 당함. 산재사망은 3만 3천 902명임.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 원에 달함. 2006년도 총사고 1,300만 건 중 1위는 산업재해로 약 1,300만 건임. 은폐된 산재까지 감안한다면 정부 통계의 13배~30배에 달함.
-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 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노동자 1명 사망에 벌금 50만원 꼴임.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남.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없이 말단 관리자 처벌만 이어지고 있음.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참사도 오세훈 전(前)서울시장의 부실시공과 공기업 외주화 남발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나, 책임자 처벌은 없이 하급관리자만 처벌됨. 메르스 확산의 주요 기업인 삼성병원의 경우 최소한의 처벌도 진행되지 않았고, 가슴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에도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판결이 남발되는 등 시민참사에 대해서도 ‘숨방

망이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참사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특히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 기업의 조직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것만이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음.

2)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하청 산재에 대한 정부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의 85%가 하청 산재임.
- 2016년 발생한 20대 청년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고용노동자였으며, 광주 남영전구 수은중독은 4차에 걸친 다단계 하청에서 발생했음. 구의역 참사, 남양주 사고, 고려아연, 한국석유공사,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노동자 사망 등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있음.
-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32%로 전체 기업 평균의 3배임. 원청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을 40%가 지목하였음. 재벌 대기업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하여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할인은 매년 수백억 원씩 받고 있음. 30대 재벌이 최근 3년간 받은 산재보험 할인액은 1조 3,796억임.
- 철도, 지하철의 선로 수리 정비 업무, 원전의 방사선 취급업무, 노후화된 화학산단의 정비 보수 업무, 병원의 외주화 남발 등으로 각종 시민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공공안전 분야의 외주화는 지진 등과 같은 재난참사의 위험 경보 시스템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하청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재난참사에 대한 긴급 대응조차도 취약한 상태임.
- 상시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직접 정규직 고용이 원칙임.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 고용을 강제해야 함.
-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하청 산재가 다발하고 있으나, 현행의 원청 책임은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안전교육 장소 지원, 합동 점검 등으로 제한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사업장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치 등을 원청의 직접 책임으로 강제해야 하며, 하청 노동자도 산재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함.
- 또한 하청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재해 통계를 생산하고, 하청의 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과 투자를 공시하도록 하

는 안전보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함.

3)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음. 업종이 통째로 적용제외 규정이 많은 분야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각종 공무원과 지자체 청소, 도로보수원 등 공공행정 분야, 학교를 비롯한 교육서비스업, 원자력 안전법, 광산, 선박 등의 업종과 사무직 노동자등임. 안전보건 관리 체계뿐 아니라, 안전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적용제외가 많음.
-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120억 건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조차 제외되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음.
-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고객폭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남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법을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일터 괴롭힘을 비롯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전혀 없어,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의 주요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자체가 부실함.
-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고객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자살, 공황장애, 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기업은 고객감동을 기치로 내걸면서, 사업장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성과평가에 반영시키고 있어,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도 노동자들은 인격적 모독을 감수하고 있음. 이미 유럽에서는 사업장내의 폭력에 대해서는 고객으로 인한 폭언 폭력을 포함하여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고발권을 강제하고, 다양한 예방보호를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두된 감정노동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사업주의 예방보호의무 법제화를 외면하고 있음
- 건설기계, 화물, 쿼 서비스 등 위험 업종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음.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업종과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전면 적용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남발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고조차 공무원, 사학연금 사업장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 지자체, 학교, 병원등은 산재예방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 한국의 산재은폐는 정부 공식 통계의 13배에서 30배에 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처벌도 미약함. 이에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에도 119를 회피하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사업주의 산재은폐 종용과 강요로 산재은폐가 횡행하고 있음. 산재은폐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으로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원

신고 제도를 한국적 방식으로 도입해야 함.

4)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 확대

-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임. 그러나 한국의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해외파견,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는 특고 산재특례와 중소기업주 특례의 2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나, 특고산재 특례는 노동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있어, 대상 노동자의 9%만이 적용되고 있음. 건설기계, 화물 등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주 특례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대상 노동자의 0.1%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음. 외국의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고 있음.
-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처리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해외파견으로 되어,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의료체계가 취약하고, 각종 위험으로 사고와 직업병이 다발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가입하는 민간보험에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 ILO 가입국가의 3분의 2 국가에 적용되는 출퇴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산림 감시 노동자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적용배제 되어 왔음.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노동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법안을 파견법 확대등 노동계약 법안과 연계하여 통과여부를 주장해 왔으며,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과실에 따른 차등 보상, 단계적 적용>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출퇴근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도록 입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새누리당 제출 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출퇴근 산재보험이 전면적용 되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함.
-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자살이 최고인 한국이지만 이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은 지금이 높거나 적용제외 되어 있음. 또한, 2013년 직업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30년 만에 개정된 것임. 외국의 경우에는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에 대한 별도 구조를 갖고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기적인 심의구조도 없음.
- 한국의 직업병 인정률은 지금이 낮음. 직업성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30%대의 인정률에 불과함. 이는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 접근성이 낮고, 직업병 산재에 대해 노동자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심사승인체계에 있음. 산재신청을 가로막으면서 산재신청을 위한 각종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직업병 불승인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음. 입증책임을 전환되어야 함.
-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기업은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영업비밀> 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위험을 숨기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장이 안전보건 자료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정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며,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는 최소화 하도록 제도화 하며, 노동자 및 퇴직자와 유족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

5)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임. 구의역 참사는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로 비롯되었으며, 철도, 지하철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각종 철도,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 지하철은 7개 업무를 무기 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였으나, 여전히 외주화 업무는 남아 있으며, 전국의 철도, 지하철의 외주화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인천공항도 외주화가 심각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보안, 소방, 시설유지·보수 등 전 분야에서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으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권한은 제약되어 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자는 18,752명에 달함. 메르스 확진 및 사망자 중 21%가 병원 종사 노동자임.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 이송요원, 구급차 안전요원 등 하청 노동자가 다수임. 병원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메르스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음.
- 2016 국정감사에 의하면 원전, 발전 등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도 외주화 하청 노동의 비율이 많고, 사망사고의 80%~100%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정보 전달체계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음.
-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의 효율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인력 고용을 최소화 하고 있음. 적정 안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쳐 나는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
-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의 대부분이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개선 대책으로 제시되었던 1인승무제 폐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인역사 등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버스의 경우에도 정비 인력을 지속 축소되고 있음. 가스의 경우에도 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교통 : 철도, 지하철 내구연한, 1인 승무제 폐지, 육상과적 화주 책임 도로법 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 폐쇄, 노후산단 전면 재 보수 및 주기 도입. 산업단지 안전관리 법제화
-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 :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병원인력 확보
- 규제완화 철폐 및 기업규제완화 특조법 폐기
- 공공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 구조 보장

-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병원의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는 실태는 외주화와 더불어 환자안전 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

6) 공공안전 대책 수립

○ 대중교통

- 세월호 침몰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선박의 문제임. 그러나, 이는 선박뿐 아 니라,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대중교통 분야의 운송수 단 및 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설비 보수를 강화하여야 함.
- 교통사고중 화물차 사고는 연 평균 1,300명에 달함. 화물사고의 상당수는 과적에 의한 대형 사고 발생이며, 과적으로 인한 교량피해도 연간 300억원이 소요됨. 과적의 원인은 화주의 강요와 저가 운임에 있음. 과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보장과 더불어 화주에게 과적 책임을 묻도록 도로법 개정이 필요함.

○ 산업단지

- 주요 국가산업단지는 1960-1970년대 조성되어 노후화 실태가 심각함. 울산등 노후 화학산 단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빈발해서, 대형사고에 대한 잠재 위험이 높음. 특히, 2016년 지진 발생으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울산 경상권에 원전과 화학산단이 있어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안을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지진, 원 전, 화학산단 모두 근본 예방대책이 아니라 대피 훈련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무능 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은 오히려 설비 보수 주기를 늘리고 예산 투 자를 감축하고 있음
- 노후 원전 및 폐쇄 및 노후 산단에 대한 전면 재보수 주기가 규정화 되어야 함. 또한, 위 험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규정하는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 메르스등 감염성 질환

- 신종플루, 메르스등 신종 감염성 질환은 계속 다양화 되고. 예방대책도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메르스 사태는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공공의료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

식을 확산시킴

-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공의료체계의 확충과 병원의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인력이 제정 되어야 함.

○ 규제완화

- 과적, 선령완화 등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규제완화 뿐 아니라 판교 붕괴, 노후 철도 지하 철 등 반복적인 재난참사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규제완화임. 이명박 정권에서 더욱 가속화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규제는 암 덩어리> 라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왔음.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사업장 안전, 보건, 가스, 위험물 관리 등 각종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사업장의 각종 안전보건관리를 위탁 대행으로 넘기게 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동화 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음.
-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규제완화가 중단 및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은 폐기되어야 함.

○ 노동자, 시민 참여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없이 안전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각종 통제만 강화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2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가능함.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의 공공기관의 장과 지역의 유지들로 채워져 있음.
- 공공 교통, 화학사고, 지역안전등 공공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무엇보다 각종위험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므로,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중소기업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업장 안전을 통한 지역안전 강화를 보장하여야 함.

7)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

- 매년 2,400명이 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사업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선임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업장 자체가 제한적임. 선임의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반 시 처벌도 미약함.
- 2013년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사업장 숫자는 3,676,876개이고, 종사자

는 19,173,474명임. 그러나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9,391개 사업장으로 0.5%에 불과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4,080개 사업장으로 0.3%에 불과함.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이라도 50인 이상 사업장 36,760개 중 업종별 적용제외가 많아, 안전 관리자는 52%, 보건관리자는 38%만 선임 대상임.

[2013 전국 사업체 조사 보고서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율]

구분	전체 사업장	50인 이상	선임 대상	전체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안전관리 자	3,676,876	44,819	19,391	0.5%	43%
보건관리 자	3,676,878	44,819	14,080	0.3%	31%

- 또한 고용규모가 확대되어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추가 채용인원이 2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채용한 관리자에 대해서도 검직이 허용되고 있음. 1,000인 이상 사업장도 평균 안전관리자는 2.53명, 보건관리자는 2.44명이며, 전체 사업체 당 평균 채용인원은 안전 관리자는 1.6명, 보건관리자는 1.5명에 불과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위탁 대행이 가능하게 되어, 2014년 기준 선임 신고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는 76%, 보건관리자는 80%가 1개월에 1~2회 방문 점검하는 위탁대행으로 되고 있음. 300인 이상 사업장, 심지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위탁대행도 확대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검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 보관관리 책임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전기 안전관리자 등임. 또한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으로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이 허용되는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 보관관리 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등임.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도입 전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비교]

구분	특조법 개정 전	특조법 개정 후	증감
안전관리자	26,057	16,520	-9,537(-36.6%)
보건관리자	11,296	9,208	-2,088(-18.5%)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를 확대하고, 직접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사업장내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정부의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권한 강화가 필요함.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330여명으로 1인당 5만여명의 노동자와 5,672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실제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은 전체 사업장의 1%내외만이 감독을 받고 있음. 매년 노동부 감독에서 90%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에 99%의 사업장이 정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각종 안전규정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산업안전을 비롯한, 가스, 전기, 위험물 등 각종 안전점검, 인증 감독을 공공화 하고 정부 감독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함.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공시 제도

-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서 직접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분야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 및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처벌 강화뿐 아니라, 기업이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음. 이 제도는 건설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 및 각종 안전보건 설비나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전 업종에 전면 적용하여, 기업이 매출의 일정 비율은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낙찰률에서 배제하는 등 실질 금액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공시제도를 원용하여 기업이 안전보건 인력 보유, 투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간접 강제하도록 하여야 함.

[첨부3.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의원 실천 제안]

[주문사항]

-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계획(투쟁기조, 목표, 실천)에 **생명안전 쟁취와 제도 개악 분쇄 의제(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작업중지 지침 개정 및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산재 직업병 처리기간 지연 대책 마련 및 산재보험개혁!)**를 포함시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 지도해 주십시오.

- 자본의 탐욕에 기인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참혹한 사망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금) 현대중공업에서 가스 저장 탱크 공사 중 하청노동자가 18톤 규모의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 18톤 규모의 철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대형 철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철판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철판 캡의 떨어짐, 꺾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받침대도 설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이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감시자조차 없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을 생존과 생명의 위협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 2017년 삼성중공업에서 목숨을 잃은 여섯 명의 노동자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故김용균** 노동자. 매년 2,000명 이상씩 똑같이 반복되는 이 죽음들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소 ▲중대재해 근절 ▲위험의 외주화 근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정책을 집권 초기부터 핵심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인 현재 문재인 정권은 기존 지침과 정책 후퇴 및 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위협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노동자 죽음 이후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지난달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 내용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복 참사와 8월 STX조선 폭발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참여조사위의 결론 역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

태 개선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내용에 대책의 핵심 사안인 위험의 외주화 금지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건설현장, 청소노동자,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노동자 등 외주화·하청의 고용구조 속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없이 일하다 죽습니다으로 내몰리는 처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 공약 파기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틈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노동존중, 촛불정권이라 자임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확인시키는 사안으로 정권에 대한 분노와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故김용균 군 투쟁을 거치며 삼성반도체 故황유미님, 제주도현장실습생 故이민호군 등의 유가족들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을 구성하고 똑같은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도 하한형 도입 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한발짝도 전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중대재해 대책의 핵심으로 내뱉던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기준>을 대폭 후퇴시키며 자신들이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했던 산안법 전면개정안은 故김용균 군의 죽음과 투쟁으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조항의 후퇴 및 삭제, 일부 개정안은 오히려 기존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누더기 처리되고, 이후 하위법령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을 달기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직업병에 걸렸지만 산재 승인 여부 결정까지의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이 166.8일(5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 의뢰 후 심의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치료와 승인 여부 고용불안 속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처리기간 지연을 비롯해 산재 신청과 재해조사 승인 과정의 불공정함 등에 대해 단호히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의 후퇴는 노동법 개악, 노동3권 말살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핵심사안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약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0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월 사회적 총파업을 하반기 투쟁계획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의제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 파기, 약속 미이행, 노동탄압의 전면화에 맞선 요구이며, 생명 안전 보호 약속 파기와 노동안전보건 제도 정책 개약 내용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과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생존권 탄압의 문제는 생명안전 의제에서도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임했던 촛불정권, 노동존중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3년 동안의 정책 후퇴와 개약,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쟁취 및 제도개약 분쇄 투쟁 의제 및 5대 요구】

①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②중대기업처벌법 제정! ③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 개정 및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 ④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⑤산업재해 처리기간 지연 대책 마련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 이 필요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윤을 위해 위험작업에 안전보건조치 없이 노동자를 내몰아 살해한 살인기업들이 엄하게 처벌하여 안전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의 생명 안전 보호 법과 제도 개약을 분쇄해 나갈 수 있도록,

-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계획(투쟁기조, 목표)에 ● 노동자 생명안전 쟁취와 제도개약 분쇄 사업을 의제를 포함시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 지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첨부4. 위험의 외주화금지대책위 참여 제안서]

(가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故 박종열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분쇄! 전국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1. 제안의 취지

○ 자본의 탐욕에 기인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참혹한 사망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현대중공업 액체 가스 저장탱크(단고테 프로젝트) 제작 작업 중 가스 탱크 기압헤드(캡)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18톤 규모의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 하청 노동자들은 떨어지거나 부딪히기라도 하면 당장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8톤 규모의 철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는 일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철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철판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철판 캡의 떨어짐, 꺾임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받침대도 설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이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감시자조차 없었습니다.

○ 현대중공업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장기 휴업조치를 시키고 수년째 구조조정을 일삼으면서, 한편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으면서 공사 프로젝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올 해 들어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단고테 프로젝트에 직영노동자를 배제 휴업조치하고 하청업체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 충격적인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던 해당 공사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는 과정의 파렴치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스저장탱크 공사(DANGOTE-단고테)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본부에서 수행했던 공사였으나 플랜트 현장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해양사업본부로 공사를 이관시켜 진행케 하는 과정에서 플랜트사업 본부측이 “정규직 직원들로 하여금 가스저장탱크 공사를 진행 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해양사업본부는“정규직 일하는 게 뻘하니 맨하워가 더 들어가게 되고 정규직을 시키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 며 해양사업본부에서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 휴직을 강행하고 하청업체 (주) 원양과 계약 후 하청 노동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작업을 강요하며 단고테 프로젝트를 진행 시키는 과정에서 사망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운전 및 보전 업무를 분사시켰고 그마저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분사된 업체에 문어발식 하청 구조를 확대해가면서 수많은 원시적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현대중공업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은 더 싼 임금의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해야 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도 철저히 방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이 극대화 되는 사이에 하청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고, 제2, 제3의 김용균노동자가 구의역 김군들이 무참히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삼성중공업에서 목숨을 잃은 여섯 명의 노동자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故김용균 노동자. 똑같이 반복되는 이 죽음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 2019년 2월,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의 호소에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서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사망 참사 이후 꾸려진 국민 참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해 제시한

대책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고 별도의 제도 개선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2017년 5월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원청에 대한 처벌은 고작 300만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로만 그치는 현실로 인해 자본이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조치마저 외면하고 있는 악순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노동자 생명 보호를 정부의 최우선의 역할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에 이은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은 노동 현장의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정책방향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면 작업중지를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해당 지침을 개악해 작업중지 범위를 ‘재해 발생 공정’과 ‘동일 작업’으로 매우 협소하게 축소시켰습니다.

○ 이번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후에도 노동부는 후퇴되고 개악된 지침을 핑계로 재해가 발생한 단고테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내에 동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있지만 지금도 그 곳에서는 위험천만한 작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故 박종열 노동자의 죽음으로 현대중공업에 정상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원하청 사업주의 공조 속에 무시되고 있음이 확인 됐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작업은 점검도, 대책 마

련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지침입니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선언만 만들어야 할 법은 외면하고 재해 예방의 핵심 원칙을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권에게 노동자 보호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이윤에만 눈이 먼 자본과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역할을 내팽개친 정권에 의한 노동자 살인을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어떤 현장에서 끔찍한 참사가 재현될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 이제 금속노조는 전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및 민주시민들의 뜻을 모아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노동자 살인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인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금속노조 뿐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죽음을 당하는 현실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개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뜻에 동의하는 전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민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국적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 금속노조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는 전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및 민주시민들의 (가칭) 현대중공업 故박종열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분쇄! 전국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대책위 추진 방안(안)

1) 제안 대상 :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 투쟁 및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민주시민

2)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 일시: 9월25일(수) 오후 14시
 - 장소: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 경향 신문사 별관 5층)
- 2) 실천 계획(초초안) : 대책위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천과 지혜를 모아 확정
- 9월 4주차: 9/25일(수) 대책위 추진위원회 1차회의 9/26일(목)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대회를 통해 관련 문제의식 공유하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하반기 투쟁 결의
 - 9월 5주차~10월 1주차 :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실천 계획 의견수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10월 2주차 : 10/11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민주노총의 세부 투쟁 계획 확정)/ 사회 각계 각층 지지 선언 조직,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전개 등
 - 10월 3주차 : 거점 투쟁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 10월 4주차 : 10/23(수) 위험의 외주화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 10월 5주차 : 10/31(목)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대회 투쟁 결의, 다양한 실천

- 이상 -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공동투쟁 참여의 건

1. 제안의 취지

- 2017년 삼성중공업·STX조선 하청노동자 참사로 정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조선업국민참여조사위)’를 구성했고 2018년 9월 ▲원천적으로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하위법령에 조선업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 제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 투쟁 이후 정부가 구성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2019. 8. 19.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권고안으로 사고의 근본 원인이 비정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원하청 구조에 있다며 ‘외주화와 민영화 철회’를 핵심 권고로 발표한바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세부권고안) 작업장 위험시설 개선과 작업중지권을 실질 보장하기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 (세부권고안) 사고원인으로 노동자 개인과실 조항 삭제 · 조사과정에 노동자(대표)의 동등한 참여와 조사권 보장 · 시설 및 설비개선 요구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요구권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요구권 · 노동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요구권 · 산재사고로 인한 재해자 및 재해자 동료 트라우마 치료 체계화 및 의무화,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세부권고안) 안전보건의 집단적 노사관계 내실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및 활동보장,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2019. 10.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목-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3가지 권고 2. 노동관계법 회피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위장도급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가지 권고 3.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2가지 권고**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 김용균 특조위와 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직접고용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선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조선소, 발전소, 제철소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으며, 중대재해의 원인과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구성하거나 추진한 각종 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문재인 정권은 일체 권고사항

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11월 11일(월)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동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거점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11월 5일(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광화문 거점투쟁 돌입을 포함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공동투쟁 계획”을 의결하고, 11월 18일(월) 금속노조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대책위원회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 이행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거점투쟁 돌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가맹조직 산하조직 동지들도 주체적으로 투쟁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실천과제”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생명안전 보장 실천과제”를 움켜쥐고 11월 12월 투쟁을 전개하고 2020년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 드립니다.

2. 실천 제안

1) 권고 사항 이행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 쟁취 광화문 거점투쟁(가칭) 결합

요청사항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단위가 하루 농성일을 정해 결합해 주십시오. 여의치 않은 경우 아침 점심 저녁선전투쟁 중 가능한 시간대에 결합해 주십시오.

- 거점투쟁 기간 : 11월 18일(월)~12월 07일(토)
 - 핵심 슬로건 : 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원회 및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권고사항 이행! 원청 책임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 주요 투쟁 동력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를 주력으로 거점투쟁을 전개함.
 - 공공운수노조는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를 주요 동력으로, 금속노조는 각 지부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조직화대책회의, 철강업종 비정규단위 총력을 모아 농성투쟁을 전개함.
- ☞ 실천내용 : 아침, 점심, 저녁 청와대 및 광화문 선전투쟁, 지하철 선전투쟁

2) 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가칭)

요청사항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추모대회 참여를 총력을 모아 조직해 주십시오.

- 주최 :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 2019년 12월 7일(토) 오후 5시/ 서울 도심
- 민주노총,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단위에서 사전결의대회 추진 검토 중

3) 출퇴근 선전투쟁 및 지역 선전투쟁

요청사항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과 단위노조들의 선전투쟁을 결의해 주십시오.

- 일시 : 11월 3주차~4주차 (11/18일~29일)
- 출퇴근 선전 투쟁(지회) : 주 1회 이상, 선전물 1종 하달, 피켓팅

4)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칭)

요청사항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결의대회를 연대를 조직해 주십시오.

(1) 대회명 및 슬로건

1) 대회명

- 정부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협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생명안전제도개악 분쇄!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칭)

2) 의제

- ① 김용균 특조위/ 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 권고사항 이행
- ② 원청책임 강화! 위협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 ③ 살인기업처벌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④ 현장 안전인력 충원
- ⑤ 문재인정권의 생명안전 제도개악 분쇄

3) 슬로건

- 주 슬로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위협의 외주화 금지하고 권고사항 이행하라!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안전인력 충원하라!

- 비정규직 그만 죽여라! 위협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하라!
-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하여 원청책임 강화하라!
- 생명안전 제도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11월 22일 (금)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행진 : 광화문광장 → 청와대 방향 행진(2개 차로 이용) → 청와대(효자동 치안센터) 앞 집회

(3) 집회 상 및 주요 요구

- 김용균 특조위/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현장 안전인력을 확보해야 안전하다. 문재인정권의 대국민 약속인 위험의 외주화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약속파기 및 생명안전 제도개악을 규탄 공론화하고 투쟁을 결의한다.
- 김용균 특조위/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원청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 살인기업처벌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현장 안전인력 충원
- 문재인정권의 생명안전 제도개악 분쇄

(4) 조직목표

- 참가 지침 : 단위별 사업장 상집간부 이상 참여와 조합원 적극 조직
- 참가 조직 목표 : 1,500명+알파로 조직 추진 : 공공 800, 금속 400, 건설 300, 대책위 50
**외주화 금지, 안전인력확보를 위한 철도파업대오와 함께 한다

시간	내용	발언
14:00-14:05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
14:05-14:15	①대회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14:15-14:25	②원청(발주처)책임강화 살인기업처벌법 제정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14:25-14:35	③내자식 내가족들 다시는 죽지않게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또는 다시는
14:35-14:50	노래와 율동	
14:50-15:00	④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	발전비정규직
15:00-15:10	⑤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 권고사항 이행	조선비정규직
15:10-15:20	노래 공연	민중가수

15:20-15:30	⑥철도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대책 요구	철도
15:30-15:35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역사적 소임	위험의 외주화 대책위
15:35-15:45	결의문	공공, 금속, 건설 노안위원장
15:45-15:55	퍼포먼스	
15:55	행진시작	
행진 후 마무리 집회 (16:30) 청와대	⑧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핵심요구로 투쟁을 전개할터!	비정규 이제그만 공동행동
	⑧민주노총의 전체투쟁으로 마무리 발언	민주노총 노안보위

5) 전국 순회 투쟁

요청사항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차원의 전국 순회투쟁을 결정해 주십시오.

① 취지 및 내용

- 김용균 노동자 1주기까지 광화문 거점 농성 및 비정규 단위 투쟁으로 서울에서의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12월 중순~말 시기에 지역 순회투쟁을 통해 서울 거점 농성 투쟁의 흐름을 이어가며 지역 여론을 환기시켜 2020년 투쟁의 단초를 마련해 감.
- 지역의 주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천투쟁 전개, 지역 발전소 권고 이행 촉구 선전전 및 결의대회,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실천투쟁, 지역 노동부 타격 투쟁, 시민문화제 및 지역선전전 등을 진행함.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를 주요동력으로 하여 순회투쟁단 구성
- 3박4일 동안 지역투쟁 전개

② 일정

- 12월 17일(화) ~ 12월 20일(금)
- 12월 17일(화) 순회투쟁 돌입 기자회견

③ 집행 및 결합 단위

- 11월 말까지 : 지역별 대책위 결합 단위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해당 사업장 노조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획안 마련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지역 조합원 및 정당·단체별 해당 지역 회원 집중

6)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및 제도 개선 쟁취 지역 결의대회

요청사항 : 1.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의 지역 결의대회를 추진을 결의해주십시오.
 2. 5) 전국 순회 투쟁과 연동하여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의 지역 결의대회 등의 실천조직을 결의해 주십시오..

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및 제도 개선 쟁취 지역 결의대회

- 추진지역: 충청, 수도, 울산, 경남
- 추진상황: 11월 25일(월) ~ 12월 7일(토) 주간 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단위에 제안해 세부 논의를 진행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충청권은 민주노총 충남 대전 수도권의 경우 1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경기권은 고 김태규 노동자 대책위와 서울반도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울산권, 경남권은 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 차원에서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임.

② 민주노총 산하조직 실천조직-전국순회투쟁과 연동

- 지역의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산재 현안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실천투쟁 기획 결합

7) 11월~12월 주요 투쟁 일정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7	18	19	20	21	22	23
주요 일정		대책위 농성돌입 기자회견(14시)			서울시 조례 관련 기자회견 (9시30분)	공동 결의대회 (14시/평화문)	
농성 담당	금속 노동안전보건실 공공발전비정규 직	비정규직이제그 만 일과건강 공공/금속서울	안산노동안전센 터,바람 공공/ 금속광주전남	경남본부,울산 산추련,마장산 추련 공공/ 금속경주구미	세종충남본부 새움터 공공/ 금속충남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공공/충북본부 /금속대전충북	공공/금속
주요 일정	24	25	26	27	28	29	30
주요 일정							민중대회
농성 담당	전북안전사회 환경모임 공공 /금속	김용균재단 다시는 공공 /금속현대차	아이쿱생협 공공/ 금속대구포항	반올림, 대전본부, 대전변혁실천단 공공/금속울산 부양전북	민주노총 정의당 공공 /금속기아차	민중당 여성환경연대, 발암물질국민행 동 공공 /금속현충	철강하청 공공/금속
주요 일정	12/1	2	3	4	5	6	7
주요 일정			토론회(14시)	토론회 후속 기자회견			1주기 추모대회
농성 담당	안산노동안전센 터,바람 공공/금속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공공 /금속비정규단 위	노동전선 공공/ 금속인천광전	민주노총 변혁당 공공/금속충남 기아	금속법률원,노 노모,민변,철폐 연대법률 공공/금속경기 대전충북	김용균재단 다시는 한노보연 공공/금속	조선하청 철강하청 공공/금속
	8	9	10	11	12	13	14

주요 일정	1주기 추도식 (10시, 모란공원)		조형물 제막식 (태안화력발전 소)				
	15	16	17	18	19	20	21
주요 일정		금속 대대	전국 순회투쟁(가안)				

	일정	주최	일시	내용
1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촛불행진	김용균재단, 비정규직 이제그만	11월 13일(수) 18시	-전태일 광장에서 광화문 분향소로 행진 후 마무리
2	권고 사항 이행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광화문 농성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11월 18일(월) ~ 12월 7 일(토)	-단위별 농성담당일 결합 -하루 기본 프로그램 및 현 안 집중투쟁 -광화문 분향소 설치, 운영
3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 투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 조 서울본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1차 : 11월 21일(목) ~ 11월 28일(목) -2차 : 11월 29일(금) ~ 12월 20일(금)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 한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함. -기자회견 : 11월 21일(목) 9시30분 -1인시위 및 필리버스터 결 합
4	건설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공동 결의대회	공동 주최	11월 22일(금) 14시	
5	지역별 결의대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지역단위	11월 25일(월) ~ 12월 7 일(토) 중	-수도권 : 김태규 대책위/ 서울반도체 네트워크 -충청권 : 세종충남, 대전, 충북본부 논의 -울산권 : -경남권 :
6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 실태 점검 토론회 “휴직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김용균 추모위	12월 3일(화) 14시	-조사위원회 결과와 권고와 미이행 규탄 및 이행 촉구 -조사위원, 현장발언으로 배치
7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위	12월 4일(수)	-조사위원, 노동안전보건활 동가, 현장노동자 합동 기 자회견
8	고 김태규 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9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김용균 추모위	12월 7일(토)	
10	전국 순회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이상 -

산재예방제도 문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1. 노동자 건강권 현실

노동자들은 매년 2,4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사망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42.5%(2016년 기준)이고 50억 이상 건설공사 98.1%(2016년 기준), 조선히청노동자는 88%(2016년 기준) 정도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발생과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하고 위험의 외주화 확대 역시 막을 수 없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하며 요구했던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권은 확대되지 않았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마저 전면 작업중지 원칙에서 후퇴하고 작업중지 해제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권이 미반영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2. 정부의 대응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산재 사망 노동자를 2022년 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노동 안전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 산재 사망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확대 등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작업중지 해제절차 시 노동자 의견 청취와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 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정에서 경총 등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대안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하거나 생색내기 정도로 반영하는 데 그쳤다. 협소한 도급금지대상, 산재사망기업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처벌 철회, 제한적인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범위 축소, 노동자 참여권의 미확대, 여전히 제한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을 개정하면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가 훼손하고 후퇴되기도 하였다.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금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 고용할 것,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외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 감독으로 산재 예방기능을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집배 노동자 과로와 자살문제, 삼성 크레인 사고 등 조선업 중대재해 문제,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국민참여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과의 외교 마찰과 코로나를 이유로 문재인정부는 전경련과 경총의 요구사항들은 신속히 반영하여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화관법, 화평법 등 관계 법령의 유연한 적용,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반노동자적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우리의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산재예방제도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현시기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온전한 작업중지권 확보와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에서 경험을 소개하며 의견을 제출한다.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투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했지만 중대재해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의 대응 투쟁이 되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로 계속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산재사망 대책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이 자주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과 비용증가, 엄중한 처벌에 대한 거

부감으로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집단 공동 입법발의,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형성,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 입법발의자 조직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 조직이 되어야 힘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일상적인 시기 노동조합이 선전물을 통한 홍보나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투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노동자의 핵심 요구로 직접 제출하고 다양한 업종과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 : 현대중공업지부는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조합원 파업과 간부 파업 등을 조직하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함]

- 중대재해 유가족 모임과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다. 유가족 투쟁에 함께하고 각 사업장이나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유가족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알리기 위해 콘서트나, 산재사망 유가족과의 대화, 낭독회, 단막극, 대중강연, 토론회 등도 적절히 배치하여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대응 투쟁

울산지역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결성 이후 지역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회의를 통해 사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토론을 거쳐 투쟁계획과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항의면담 시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 살인기업 사업주(원청 사업주) 구속 투쟁

- 중대재해 발생 시 철저한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고발한다.
- 중대재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업주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중대재해가 근절될 수 있음을 알린다.
-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항의면담 시 사업주 구속처벌을 요구한다.
- 사업주 구속과 처벌이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을 폭로하고 판결 결과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정확히 알린다.
- 중대재해 발생 시 검찰이 개인 질환으로 몰고 가며 부검 시도하는 행위를 단호히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주 구속 투쟁

울산지역의 경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에 대해 2003년 사업부 본부장, 2004년 안전보건총괄중역이 구속처벌 된 적이 있는데 이후 원청 사업주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구속된 적은 없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참사에도 사업주가 구속되는 적이 거의 없고 2017년에는 사업주가 구속된 경우는 단 1건이다. 노동자들도 사업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 사업주 구속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구속요구 투쟁이 점차 소극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사업주 책임이 일정정도 강화되었는데 사업주 구속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 올해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5건 발생에 대해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업주 구속처벌 투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3)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작업중지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용노동부 조치는 무엇일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조선소의 크고 작은 재해에 대해 정부의 행정처분은 비교적 관대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해석되었다. 조사결과 정부당국의 행정처분은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과태료 금액도 1건당 126만원으로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 5년동안 정부에 의한 조선업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06건 이었으며 과태료 전체 금액은 총 25억 2천만원에 불과하였다. 면접조

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용자들은 정부의 과태료에 대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며 오히려 작업중단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업주에게 가장 부담스런 작업중단, 작업중지를 고용노동부는 봐주기, 눈치보기, 소극적 대응과 직무유기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는 실태이다. 더구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 개악과 산업안전보건법 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도 매우 협소하게 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둘러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작업중지 관행을 깨고 전면적인 작업중지로 사업주를 압박하고 사고원인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도록 하자.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자.

--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조합은 작업중지를 하고 철저한 사고원인조사를 한다.

--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만 명령할 경우 이에 대해 항의하고 바로 잡는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내 동일작업 작업중지가 최소한이고 안전보건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전면작업중지를 요구한다.

--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한다.

--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의 현주소

2019년 경주 서진산업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2020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는 해당 작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반복된 요구에도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작업중지를 명하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5월 21일 중대재해 발생 시 전 사업장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로 동일작업 작업중지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계속된 항의투쟁과 잇단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작업중지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험의 외주화금지 투쟁

-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진척이 없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은 매우 협소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못 되고 있다.

- 2017년 삼성크레인 사고 후 진행되었던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특별조사 결과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를 권고하고 김용균노동자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조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선업 국민참여조사위 결과 중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조선소내 물량팀 사용금지만이 아니라 조선소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특조위 결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개선해야 한다.

-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 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을 확대하고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 고용할 것,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외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 감독으로 산재예방기능을 강화하라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자.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은 '도급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조선업 하청노동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철로 보수작업 노동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도급금지대상이 확대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투쟁을 전개하자.

- 산재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의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하자.

4.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시다!

현재 산재예방제도는 우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산재예방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지역투쟁으로 확산하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시다!

노동안전보건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 명선

1. 들어가며

지난한 투쟁 속에 우리 앞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 “산재보상보험 제도개선 투쟁”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민주노총은 2020년 투쟁과 세부 사업계획 논의 및 결정을 하였고, 현안투쟁과 더불어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음. 이에 현재까지 논의 된 투쟁계획을 제출하는 바이며, 오늘의 토론에서 현장의 다양하고 치열한 논의 속에 보완되고 힘 있는 집행을 기대함.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1) 개요

-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투쟁으로 결의
-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이후 8년 동안 수차례의 입법발의와 폐기가 진행되었고, 이에 실질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인 투쟁, 산재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당사자 투쟁, 국회입법 전략 및 광범위한 노동시민사회 운동기구 발족을 추진함
- 2020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현장 산재참사로 입법 투쟁의 사회적 확산이 고조되고 있어, 실질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

2)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인 투쟁의 전개를 위한 방안

- 입법 서명운동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발의자’ 조직운동을 전개함.
- 입법 발의자는 사업장 및 지역에서 입법발의자를 추가 조직 확대하고, 사업장 및 지역별 대중사업을 전개
-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조직적 결정하고, 전 조직적인 교육선전사업, 입법투쟁의 주요 의제로 전개
- 5월27일 민주노총 강사단 교육을 통한 전 조직적 교육선전사업 전개, 민주노총 임원 현장순회 등 민주노총 주요 투쟁계획으로 전개됨
- 근로기준법은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사업단’ 노조법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 대표자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운동본부로 각각의 핵심 사업단위가 전개하며, 공동 사업으로 전개됨.

3) 당사자 투쟁의 확대

- 산재피해자 가족모임인 '다시는'의 2020년 주요 투쟁과제로 결의됨
- 산재 및 재난참사 피해자 모임으로 확대 구성. 1차 회의 진행. 입법 투쟁의 당사자 투쟁 전개 논의
- 사업장 및 지역의 대중사업에 피해자 모임이 결합하여 입법운동의 대중사업에 결합 방안 논의 중
- 21대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입법촉구 사업의 주체로 결합 방안 논의 중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구성

- 2015년 발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해소하고, 광범위한 운동본부 발족 추진
- 1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조직기구 발족 : 5월27일 발족 예정
- 지역별 기구 구성 추진 : 대전, 충남, 충북지역 기구 구성 1차 회의 진행. 울산, 경남, 경기등도 추진 모색
- 7월경부터는 제정운동은 중앙뿐 아니라 지역사업으로 전개도 본격화
- 전태일 3법은 전태일 50주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정당을 포괄하는 대중입법 운동으로 전개될 것임.

5) 법안 및 입법 전략

- 20대 국회 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법률팀 조문 1차 완성
- 운동본부내의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법안 확정
- 법안발의 및 10만 국민입법청원은 법안 심의를 강제하는 것이며, 국회내에서는 입법동의 의원을 확대강제하고, 입법반대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별로 규탄투쟁을 병행
- 입법 전략은 6월 집중 토론을 통해 논의 결정

6) 투쟁 사업

- 5월-6월은 21대 국회 개원 시 우선입법을 요구하는 농성투쟁 및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 국민입법청원이 진행되는 시기인 하반기에는 별도 투쟁 배치 추진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

1) 산안법 개정 투쟁

-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투쟁이 상반기 일정하게 배치되었음

- 21대 국회 개월이후 도급금지 범위 확대 산안법 개정 투쟁과. 기간제 고용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개정 투쟁 배치
-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현장 투쟁 전개가 필요
- 플랜트 현장등 발주처와 원청의 해석 기준에 따른 현장투쟁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 현장 이행 및 주체 확대 투쟁

- 간접고용 사업장 산안법 교육 및 현장 이행투쟁 및 개정투쟁 추진
- 특수고용 대책위 산안법 교육 및 현장 이행투쟁 및 법 개정 투쟁 추진 - 특고는 2021년 과제로 제출하고 있음

3) 정규직 전환 투쟁과의 연계 검토

- 코로나 관련 문제점이 드러난 콜센터 노동제 대한 기획감독, 정규직 전환 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과 연계 논의 필요
- 민주일반 노동안전보건 교육으로 현장 투쟁을 활성화 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이행 투쟁, 민주일반의 생활폐기물 위탁금지 및 직접고용 투쟁과 연계 지원

4. 산안법 개정 투쟁

- 작업중지명령 등 핵심적으로 후퇴된 산안법과, 전부 개정안에서 누락된 법 개정안을 토론 정식화 하여 공동 투쟁 전개

5. 노동자 참여 현장투쟁 및 제도개선 투쟁

- 노동자 참여관련 제도개선이 15년째 전혀 진행되지 않아 개정된 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
-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개선 투쟁, 현장출입권 및 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이 전개되어야 함
- 노동부의 연구 및 사업계획에 반영시킨 상태로, 노동자 참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
- 마트노조, 학교, 지자체 등 현장의 산보위 결성 투쟁을 지원, 조직 확대하고, 공동투쟁으로 만들어 나감
- 산재예방조례가 제정투쟁을 전개했던 서울시, 경기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조례를 실질 이행하고 구성을 강제하며, 노동부의 감독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및 건강증진 조례 제정단위 및 추진 단위와 공동으로 연기되었던 지역노동안전보건사업 전략 수립

6. 산재보상 제도개선 투쟁

- 특수고용 산재보험 확대 및 마트 배송기사 노동자등 산재보험의 근로자 판단기준 제도개선: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8월 완료이후 제도개선 투쟁 전개
- 산재보상의 추정 원칙 확대 법 제도개선 투쟁
- 태아 산재보험 등 법 개정 투쟁
- 산재보험 비 급여 ZERO화 관련 지속적 제도개선 투쟁